

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. 15.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우리구의 괴정2동·장림1동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“괴정제2동” 위치를 “괴정동354-22” 로 하며, “장림제1동” 위치를 “장림동1140” 으로 함.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조

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[별표] 중 “괴정제2동” · “장림제1동”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

구 분	위 치
괴정제2동	괴정동354-22번지
장림제1동	장림동1140번지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괴정제2동 사무소 소재지의 위치는 2002년 6월 5일부터 적용하고, 장림제1동 사무소 소재지의 위치는 2002년 6월 4일부터 적용한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(안)	
제2조(소재지) [별표]		제2조(소재지) [별표]	
구 분	위 치	구 분	위 치
· ·		· ·	
괴정제2동	괴정동203-31	괴정제2동	괴정동354-22
· ·		· ·	
장림제1동	장림동325-29	장림제1동	장림동1140
· ·		· ·	